## 변경 대비표

□ **대상펀드명**: 트러스톤 ESG 제갈공명 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**변경 사항:** F클래스 신설

□ 효력발생일: 2025. 11. 13.

□ 변경 내용

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정사유                   | 정 정 전        | 정 정 후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--|
| 요약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|  |
| 투자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유형 총보수 최<br>근기준으로 기재 | -            | 2025. 9. 30. 기준  |  |  |
|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2025. 9. 30. 기준  |  |  |
| 집합투자기구의<br>종류                      | 클래스 신설                 | (신 설)        | 기타: 기관(F) 법시행령 제10조<br>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<br>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<br>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<br>인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<br>이 100억 이상인 내국법인을 대<br>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<br>니다.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|  |
| 1. 집합투자기구<br>의 명칭                  | 클래스 신설                 | <u>〈신 설〉</u>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F)  |  |  |
|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|  |
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               | 클래스 신설                 | <u>〈신 설〉</u>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F)  |  |  |
| 2. 집합투자기구<br>의 연혁                  | 연혁 업데이트                | <u>〈신 설〉</u> | <u>2025.11.13</u> : F클래스(기관) 신<br>설  |  |  |
| 5. <del>운용</del> 전문인력<br>가. 운용전문인력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| _            | 2025. 9. 30. 기준  |  |  |

| 5. 운용전문인력<br>나. 운용중인 집<br>합투자기구에 관<br>한 사항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| _            | <u>2025. 9. 30. 기준</u> 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6. 집합투자기구<br>의 구조<br>나. 종류형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| 클래스 신설     | <u>〈신 설〉</u>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F)<br>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<br>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<br>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<br>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<br>구,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<br>상인 내국법인                |
| 6. 집합투자기구<br>의 구조<br>다. 종류형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| 클래스 신설     | (신 설)        | 기타: 기관(F)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급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인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11. 매입, 환매,<br>전환절차 및 기준<br>가격 적용기준<br>가. 매입           | 클래스 신설     | <u>〈신 설〉</u> | 2) 종류별 매입자격  ⑨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  (F):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 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 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인 내국법인                  |
| 13. 보수 및 수<br>수료에 관한 사항<br>가. 투자자에게<br>직접 부과되는 수<br>수료 | 클래스 신설     | <u>〈신 설〉</u>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F)   |
| 13. 보수 및 수<br>수료에 관한 사항<br>나. 집합투자기구                   | 클래스 신설     | 〈신 설〉       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F)   |

|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| 동종유형 총보수 최<br>근 기준으로 기재 | - | 2025. 9. 30. 기준 |  | 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<ol> <li>집합투자업자</li> <li>에 관한 사항</li> <li>가. 회사 개요</li> </ol> | 최근 기준으로 기재<br>연혁 추가     | - | 2025. 9. 30. 기준 |  |  |  |
| 1. 집합투자업자<br>에 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 규<br>모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<br>연혁 추가     | - | 2025. 9. 30. 기준 |  |  |  |